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96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3. 6.
3. 회 부 일 : 2026. 3.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및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지원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문학진흥법」에 유사 시설과 동일한 법적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III. 검토의견

1.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 (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개정안은 국가가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8조제3항),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18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① ·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③ (생략)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문학관”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¹⁾

현행법 제18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²⁾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여야 하는 국립한국문학관은 2019년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24년 5월 건립공사가 착공되었고, 2026년

1) 「문학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보존·복원·관리·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
3.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4.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학관 자료의 기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2.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② 국립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그 밖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반기에 완공되어, 2027년 상반기에 개관 및 운영 예정임.³⁾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2019년 4월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이 설립되어서 소장자료 이관 준비, 문학관 콘텐츠 제작, 문학관 시설 및 환경 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립한국문학관의 개관을 준비하고 있음.⁴⁾

한편, 문화의 창달과 국민체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업무를 위탁 수행하며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유관 단체와 공연장 등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기관 설립시 국유재산 양여의 특례를 받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기관·단체 등의 국유재산 특례현황 >

기관 등	근거 법률	특례 유형
국가, 지자체 위탁운영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공연법」	사용료등의 감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사용료등의 감면

3) [참고]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현황” 참조

4) 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조직은 1국(사무국), 1실(학예실), 4부(기획운영부, 교류협력부, 자료구축부, 전시운영부)로 구성, 정원 14명, 2026년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 8억 100만원, 사업비(소장품 관리, 사전개관준비, 시설 및 환경조성) 예산 43억 7,500만원

기관 등	근거 법률	특례 유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법」	사용료등의 감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양여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방문화원진흥법」	사용료등의 감면
지방이전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사용료등의 감면
한국문학번역원	「문학진흥법」	양여

※ 자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 등의 운영경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재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관들이 다수 존재함.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기관·단체 등의 예산 지원 근거 >

기관 등	근거 법률	지원 내용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국악방송	「국악진흥법」 제17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국어문화원	「국어기본법」 제24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기관 등	근거 법률	지원 내용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한 지원
세종학당재단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설립 및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6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예술의 전당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사업과 활동 및 운영 보조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	사업과 운영 보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3조	사업과 활동 및 시설 경비 지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필요한 경비 보조 또는 출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출연 또는 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1조	사업에 필요한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사업과 활동 및 운영 보조
한국문화정보원	「문화기본법」 제11조의3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출연 또는 지원

기관 등	근거 법률	지원 내용
한국문학번역원	「문학진흥법」 제14조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출연 또는 보조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운영재원의 출연 또는 보조
한국영상자료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의2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출연 또는 보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제122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출연 또는 보조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법」 제122조의2	설립·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출연 또는 지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보조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설립과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출연 또는 지원

그러나, 국립한국문학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 등과 달리 국유재산 특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립문학관 부지⁵⁾

5) 한국국립문학관 부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에 해

및 건물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예산으로 국가에게 다시 납부함으로써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 아울러 운영과 원활한 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이 완공된 이후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하여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문학 작품 발간과 문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국유재산 무상 사용 등 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6)에 따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어, 개정안 제18조제3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

당하게 될 예정임.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7) 그러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개정안과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비로 건축 중인 국립한국문학관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이 안정적으로 문학관 시설운영 및 문학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운영을 위해 예산(2026년 기준 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학관 건물 사용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매년 사용료(약 27억원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며, 개정안의 시행 전까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됨. 다만, 2026. 9. 기준 개정안과 관련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임.

8) 연 사용료(국유재산법) : 26억 6,800만원 = 1,067억 3,800만원(재산가액) × 25/1000(행정목적 수행)

참 고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현황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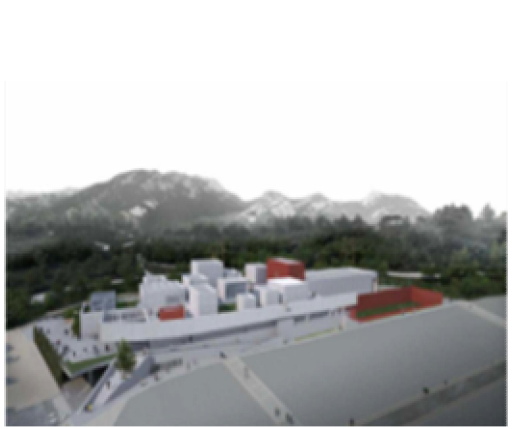
□ 국립한국문학관 법인 개요

법인명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일	2019.4.23.
설립근거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설립목적	한국문학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복원, 관리, 전시, 연구, 교육, 연수 등을 통하여 문학 유산의 계승과 문학 활동의 진흥 및 발전을 도모하고 문학인 포함 모든 국민의 문학 창작과 향유 증진
법인형태	문체부 승인 비영리특수법인('19.4.23. 지정), 공직유관단체('19.12.31. 지정)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82, 2층
주요연혁	2019. 4월 : 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설립(초대관장 염무웅) 2020. 6월 : 국립세종도서관 내 임시수장고 설치·운영 2026. 1월 : 제3대 임헌영 관장 취임

□ 주요 사업 (「문학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사업)

- 문학관 자료의 수집·보존·복원·관리·전시 및 활용
-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
-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육·협력
-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사업 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75	
부지/연면적	대지면적 13,248㎡/ 연면적 14,993㎡	
주요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실 3개실, 수장고, 교육공간 등)	
총사업비	774억원	
사업기간	2021년~2026년	
사업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추진근거	문학진흥법 제18조	

□ 추진 경과

- '19. 2월~7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19. 9월~'20. 8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실시(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
- '20. 9월 총사업비 관리대상 신규사업 등록 및 총사업비 확정
- '20. 12월~'21. 6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국제 설계공모
- '21. 7월~'23. 9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4. 1월 건립 부지 기부채납 협약(문체부-SH공사) 체결
- '24. 3월 건립공사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 '24. 5월 건립공사 착공
- '26. 8월 건립공사 준공(예정)
- '26. 12월 국유재산 사용승인(문체부 → 국립한국문학관)
- '27. 상반기 국립한국문학관 개관(예정)

※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이 개관부터 문학관 시설 운영 및 문학관련 사업추진 예정

□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사업비>	77,390	2,183	30	1,552	6,413	24,862	42,350
공사비	70,091	0	0	0	6,070	23,356	40,665
설계비	3,317	2,183	30	949	0	0	155
감리비	3,740	0	0	546	292	1,446	1,456
시설부대비	242	0	0	57	51	60	74

* 산출기준 : ('21년~'25년) 결산액 기준 / ('26년) 예산현액 기준